

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1119
번 호	-1

발의년월일 : 2005. 12. .

발의자 : ~~이기연~~의원 외 3 명

1. 수 정 이 유

- 시장이 제출한 의견이 장수수당 지급은 타당하나 다소 재정적 부담이 예상됨으로 수당액을 하향조정하고,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당 지급신청 등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
- 매월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30,000원으로 수정하고 장수수당 신청 및 지급시기를 15일과 20일로 각각 수정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장수수당 지급액을 월 30,000원 정함. (안 제4조)
-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이 접수하여 매분기말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매분기말 20일까지 금융계좌로 지급 (안제5조제1항 및 제3항)

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중 “50,000”을 “30,000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중 “20” 을 “15”로 하며, 동조제3항중 “25” 을 “20”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(안)

의안 번호	110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11.

발의자 : 이동구 의원 외 3인

1. 제 안 이유

- 노인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과 함께 지역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,
- 후손들에게 경로 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는 광양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서 지급 시기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로 지급함. (안 제 3조)
-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50,000원으로 함. (안 제4조)
- 장수수당을 받고자 하는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,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제출하며, 시장은 금융계좌로 지급함. (안 제5조)
-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, 전출하는 때와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6조)
- 2006. 7. 1.부터 시행 (안 부칙)

3. 관련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, 제15조, 제123조
- 노인복지법 제4조

4. 재정수반사항 : 218,100천 원

○ 연간 소요액 : 727명 ×50,000×12월 = 436,200천 원

○ 2006년도 소요액 : 436,200천 원/2 = 218,100천 원

※ 85세 이상 노인현황 : 727명 (남 171, 여 556)

5. 조례 안 : 별첨

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장수노인"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
2. "장수수당"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 (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) ①지급대상자는 광양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

②지급 시기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로 한다.

제4조 (지급액)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50,000원으로 한다.

제5조 (지급신청 및 방법 등)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(위임장 소지자)가 신청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.

④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.

제6조 (지급중지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장수수당지급신청서

①지급대상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(전화 :)			
②가족상황	본인과의 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동거여부	직업
③지급계좌	예금주		계좌번호		

위와 같이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(지급대상자와의 관계 :)

읍·면·동장 귀하

관 련 법 규

<지방자치법>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자·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23조 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)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노인복지법>

제2조 (기본이념)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
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 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